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2455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8. 10. 19.

판결 선고 2018. 12. 7.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10130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2016. 9. 21. 군포시 C 답 615㎡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9. 26. 접수 제1298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D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데 따른 구상금채권으로, D의 연대보증인인 A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341,190,344원(= 340,569,127원 + 621,21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40,569,127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6. 12. 2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있다.

비록 피고와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위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A의 연대보증 아래 D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D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간격도 얼마 되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A이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9. 21.로부터14일 만인 2016. 10.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6. 12. 21.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의 채무초과 상태

갑9, 12, 14호증, 을나1, 2, 4호증, 을나3호증의 1~9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조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은 없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9. 21.을 기준으로,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조암농업협동조합은 2014. 8. 26.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억 4,4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변동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로 추정되는 1억 4,4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아니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 4억 6,350만 원(= 1억 8,900만 원 + 2억 7,450만원), 조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149,195,559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보증금채무 1억 원, 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채무 1억 4만 원 등 그 소극재산의 합계가 8억 1,273만 5,559원(= 4억 6,350만 원 + 149,195,559원 + 1억 원 + 1억 4만원)에 이르렀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A이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 등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 가 된다. 그리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보증사고의 발생 시점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A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2,694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미 조암농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149,195,559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더 이상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책임재산으로 제공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가 마쳐졌다고 해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적어도 1억 4,400만 원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실제 대출원리금은 149,195,559원에 달하지만 담보되는 범위는 위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을 초과하므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제공되는 부분이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A에 대한 대여금채권 4억 6,35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이로써 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주주 겸 임원으로서 D의 대표이사로 있던 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해오다가 D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비로소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판사 손병원, 판사 방웅환